

2005. 3. 22.(화)

제110회임시회제4차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-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자 치 행 정 위 원 회

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3. 10. 제천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5. 3. 11.
- 다. 상정일자 : 2005. 3. 16. (제110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사업과장 서길석)

가. 제안사유

- 납골안치단의 가격상승 및 납골당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심각하여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국가유공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봉안기간 조정(제5조)
- 사용료 및 관리비 조정(제7조)
-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대상자 조정(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후준)

-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(공설묘지등의설치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공설묘지, 공설 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·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한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하겠으며

○ 공설납골당 설치기준

- 납골당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납골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동 시설이 갖추어진 묘지에 납골당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관리사무실, 유족편의시설,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,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
- 제5조의 유골의 봉안 기간을 30년에서 15년으로 개정하는데 따른 문제는 없는지
- 제8조 사용자등의 정의에 망자와 연고지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
- 제9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수함에 있어서도 연고자 중심인지 망자 중심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하며
- 제9조의 사용료의 감면을 국가유공자 등에 관하여 감면내용을 면밀히 규정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제5조의 무연고 유골등에 대한 전액감면 조항도 삽입하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- 납골당의 봉안 기간이 15년등으로 만료시에 대한 처리절차, 제시공자에 대한 처리 절차등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명시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봉안기간이 30년에서 15년으로 단축이 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가? (이동수 위원)
- 기간 종료후 무연고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? (이동수 위원)
- 지금 봉안할 수 있는 잔여가 몇기나 있는가? (이동수 위원)

- 납골당의 경우에 손실요인이 예상 된다고 분석이 되어 있다면 금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이 조례개정의 의미가 더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(김진학 위원)
- 봉안기간은 30년에서 15년으로다가 3회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15년이 지난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? (유경상 위원)
- 지금까지 안치된 납골은 총 몇위나 됩니까? 윤성열 위원)
- 약 5천기 되는 것은 지금 조례에 의하면 30년 봉안기간 3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조례개정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? (윤성열 위원)

나. 답변요지 (복지사업과장 서길석)

- 네,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.
- 무연고는 현재 우리 조례상 10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음.
- 지금 1만 5400기 정도로 보실 수 있는데 기존 A, B동에 한 400기가 남아있고 만기짜리 새로 지은게 1만 400위 정도 공간이 있음.
- 배로 올려도 적자를 못 면함. 다만 적자폭을 줄일려고 행정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음.
- 일반분묘 공고 하듯이 공고를 해 연고자한테 연락이 없거나 인도를 본인이 거부하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무연분묘로 분리해서 10년간 더 보관했다가 산골처리함.
- 현재 약 5000기 정도 됩니다.
- 그전 조례에 의해서 한거는 그전 조례에 따르고 앞으로 새로 하는 것은 새조례를 적용받게 됨.

5. 소수의견

“없 음”

6. 토론요지

“없 음”

7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“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납골당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